<2025 물류관리사 기출문제집(25.1.20 발행)>
개정 법률에 따른 추록

[27회] 기출문제_물류관련법규	
p.174 50번 ①번	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, 법 개정 **「법 제22조의7 제2항(24.1.9 개정, 24.7.10 시행」**으로 인하여 **'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'**로 변경되었습니다.

[26회] 기출문제_물류관련법규	
p.269 44번 문제 삭제	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, 법 개정으로 인하여 **'녹색물류협의기구'가 폐지「시행령 제48조의2 삭제(24.7.2 개정, 24.7.10 시행)」**되었으므로, 해당 문제는 삭제해주세요. (*'녹색물류협의기구'가 폐지되고 '녹색물류전문위원회'가 설치됨)
p.270 45번 ③번	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, 법 개정으로 인하여 **'전문위원'이 폐지「시행령 제9조 삭제(24.7.2 개정, 24.7.10 시행)」**되었습니다. (*'전문위원'이 폐지되고 '전문위원회'가 설치됨)
p.286 74번 해설 수정	[해설] ②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법인인 경우 정관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~~**해양수산부장관,**~~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). → 해당 문항의 해설은 법 개정 **「시행규칙 제4조 제1항(24.7.1 개정, 24.7.1 시행)」**으로 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.
p.288 78번 해설 수정	② 20년 → **50년** → 해당 문항의 해설은 법 개정 **「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(23.10.10 개정, 23.10.19 시행)」**으로 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.

[25회] 기출문제_물류관련법규	
p.366 47번 ②번, ⑤번	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, 법 개정으로 인하여 **'녹색물류협의기구'가 폐지「시행령 제48조의2 삭제(24.7.2 개정, 24.7.10 시행)」**되었습니다. (*'녹색물류협의기구'가 폐지되고 '녹색물류전문위원회'가 설치됨)
p.368 52번 해설 수정	[해설]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(「항만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), **해양수산부장관(「항만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) 또는 시·도지사(「항만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(법 제21조의2 제1항).** → 해당 문제의 해설은 법 개정 **「법 제21조의2 제1항(24.1.16 개정, 25.1.17 시행」**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
[24회] 기출문제_물류관련법규	
p.454 42번 ⑤번	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, 법 개정으로 인하여 **'전문위원'이 폐지「시행령 제9조 삭제(24.7.2 개정, 24.7.10 시행)」**되었습니다. (*'전문위원'이 폐지되고 '전문위원회'가 설치됨)
p.460 53번 ①번	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, 법 개정 **「법 제22조 제1항(20.4.7 개정, 21.1.1 시행)」**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참고] **제22조(일반물류단지의 지정)**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. <개정 2020. 4. 7.> 1.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걸쳐 있는 경우 : 국토교통부장관 2. 제1호 외의 경우 : 시·도지사
p.461 54번 ②번 및 <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사항 5.> 수정	②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**~~문화재~~(→ 국가유산)**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***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사항** 5. **~~문화재~~(→ 국가유산)**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→ 시험 시행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, 법 개정 **「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(24.5.7 개정, 24.5.17 시행)」**으로 인하여 **'5.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'**이 **'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'**으로 변경되었습니다.